

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7.22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○ 제안 : 1998년 7월 14일 제출

○ 회 부 : 1998년 7월 14일

세

3. 제안이유

교육기본법,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“교육법 제158조”를 “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”으로 함 (안 제1조)
- 특별장학생에 대한 공납금의 면제범위 “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”를 “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”로 함 (안 제5조)
- 특별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중 “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”를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”로 함 (안 제7조제1항제2호)

5. 검토의견

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, 특별장학생에 대한 공납금 면제범위의 일부 조정과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상위법개정(98.2)후 조례개정(98.7)의 지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